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무선국		무선종사자
1.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2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능사 2명
2.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제한무선통신사 2명
3.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주로 행하는 해안국	가. 250와트 초과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3명
	나. 250와트 이하 해안국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해상무선통신사 2명